

## 부 록 2-나-1

### 대한민국

1. 이 부록은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율할당(관세율할당)에 적용되며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상품에 대한민국이 적용할 관세율할당을 반영하는 대한민국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K)에 대한 수정을 규정한다. 특히, 이 부록에 포함된 미합중국 원산지 상품은 HSK의 제1류 내지 제97류에 명시된 관세율 대신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HSK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록에 기술된 물량의 미합중국 원산지 상품은 이 부록에 규정된 대로 대한민국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허용된다. 더 나아가,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따라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원산지 상품의 어떠한 물량도 HSK의 다른 부분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2. 이 부록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관세율할당을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한다.

#### **이 협정에 규정된 특정 관세율할당에 대한 공매제도**

3. 대한민국은 이 부록의 제9항, 제11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및 제20항에 규정된 관세율할당(공매된 관세율할당)의 이행 및 운영을 위하여 공매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규정한다. 다만, 가호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sup>1)</sup>

가. 1) 공매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이 연속된 3년 중 2년 동안 95 퍼센트 미만이 사용된 경우에는 미합중국의 서면요청에 따라, 양 당사국은 불완전한 사용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다루기 위하여 공매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협의한다. 협의시 양 당사국은 일반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

2) 양 당사국은 요청일 후 30일 이내에 협의를 개최한다.

3) 대한민국은 공매된 관세율할당의 완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

1) 공매제도의 조건은 미사용된 허가의 시의적절한 반납과 재배분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수입이행보증금의 몰수를 포함하여 미사용된 허가를 사용 또는 반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벌칙을 포함한다.

수단에 관하여 양 당사국이 도달한 합의를, 합의에 도달한 날 후 6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날까지 이행한다.

- 4) 대한민국은 다음 중 한 가지가 발생하는 경우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이 관련 관세율할당에 따라 선착순 방식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

가) 대한민국이 3목에 따른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나) 1목에 언급된 협이가 협의요청일 후 90일 이내에 또는 양

-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날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 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이 항의 적용 또는 운영에 관련된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협의한다. 그 협의는 당사국의 협의요청 접수일 후 15 영업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개시한다.

#### **이 협정에 규정된 특정 관세율할당에 대한 허가제도**

4. 대한민국은 이 부록의 제10항, 제12항, 제15항, 제16항, 제17항, 제18항, 제19항, 제21항, 제22항, 제23항 및 제24항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이행과 운영을 위하여 허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가호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양 당사국은 관세율할당 물량을 받을 자격을 포함하여 허가제도의 정책 및 절차와 이에 대한 어떠한 변경 또는 개정에도 합의한다.

- 가. 1)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이 연속된 3년 중 2년 동안 95퍼센트 미만이 사용된 경우에는 미합중국의 서면요청에 따라, 양 당사국은 쿼터 내 물량의 불완전한 사용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다루기 위하여 배분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협의한다. 협의시 양 당사국은 일반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

2) 양 당사국은 요청일 후 30일 이내에 협의를 개최한다.

- 3) 대한민국은 관세율할당의 완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에 관하여 양 당사국이 협의시 도달한 합의를, 합의에 도달한 날 후 6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날까지 이행한다.

- 4) 대한민국은 다음 중 한 가지가 발생하는 경우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이 관련 관세율할당에 따라 선착순 방식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

가) 대한민국이 3목에 따른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나) 1목에 언급된 협의가 협의요청일 후 9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날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이 항의 적용 또는 운영에 관련된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협의한다. 그 협의는 당사국의 협의요청 접수일 후 15 영업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개시한다.

### **국영무역기업**

5. 대한민국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와 그러한 조건에 따라서만 자국의 영역에서 국영무역기업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이 수입·구매 또는 유통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넙치류

6.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	1,530
2	1,652
3	1,785
4	1,927
5	2,082
6	2,248
7	2,428
8	2,622
9	2,832
10	3,058
11	3,303
12	무제한

물량은 선착순방식에 따라 들어온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관세철폐) 제1항차호 단계별 양허유형 J에 따라 철폐된다.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303390000.

## 명태

7.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	4,000
2	4,360
3	4,752
4	5,180
5	5,646
6	6,154
7	6,708
8	7,312
9	7,970
10	8,688
11	9,469
12	10,322
13	11,251
14	12,263
15	무제한

물량은 선착순방식에 따라 들어온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의 대한민국 관세양허표의 일반주해 제3항사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T에 따라 철폐된다.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303791000.

민어(미크로포고니아스 운들라투스)

8.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	1,000
2	1,050
3	1,103
4	1,158
5	1,216
6	1,276
7	1,340
8	1,407
9	1,477
10	1,551
11	1,629
12	무제한

물량은 선착순방식에 따라 들어온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 제1항차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J에 따라 철폐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303799095.

분상의 밀크 또는 크림(지방 1.5퍼센트 미만)과 버터밀크,  
 분상의 밀크와 크림(가당 및 무가당, 지방 1.5퍼센트 초과)(전지분유),  
 밀크와 크림(연유)(가당 또는 무가당 및/또는 농축하지 않은 것)

9.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	5,000
2	5,150
3	5,305
4	5,464
5	5,628
5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매년 3%씩 복리로 증가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관세유탈당을 운영하며, 관세유탈당의 쿼터 내 물량을 분기별(12월, 3월, 6월 및 9월) 공매를 통하여 배분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의 대한민국 관세양허표의 일반주해 제3항카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X에 따라 취급된다.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402101010,  
 0402101090, 0402109000, 0403901000, 0402211000, 0402219000,  
 0402290000, 0402911000, 0402919000, 0402991000 및 0402999000.

## 식용유장

10.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	3,000
2	3,090
3	3,183
4	3,278
5	3,377
6	3,478
7	3,582
8	3,690
9	3,800
10	무제한

한국유가공협회가 이 관세유탈당을 운영하며, 쿼터 내 물량을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허가제도를 이용하여 배분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의 대한민국 관세양허표의 일반주해 제3항과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Z에 따라 철폐된다.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404101010, 0404101090, 0404102110, 0404102120, 0404102130, 0404102190 및 0404102900.



## 버터 및 우유 추출 기타 유지방

11.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	200
2	206
3	212
4	219
5	225
6	232
7	239
8	246
9	253
10	무제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고 쿼터 내 물량을 공매를 통하여 배분하며, 원산지 상품의 전체 쿼터 내 물량은 1월에 실시되는 그 연도의 첫 번째 공매 동안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첫 번째 공매에서 배분되지 아니하는 모든 물량은 3월 15일 이전의 후속 공매에서, 그리고 직전 공매일 후 45일 이내의 추가 후속 공매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의 제1항사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G에 따라 철폐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405100000 및 0405900000.

치즈(신선, 갈았거나 분상한 것, 가공한 것, 그리고 기타 모든 종류)

12.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	7,000
2	7,210
3	7,426
4	7,649
5	7,879
6	8,115
7	8,358
8	8,609
9	8,867
10	9,133
11	9,407
12	9,690
13	9,980
14	10,280
15	무제한

한국유가공협회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며, 쿼터 내 물량을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허가제도를 통하여 배분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 제1항아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H에 따라 철폐된다.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0406101000, 0406200000, 0406300000 및 0406900000(0406900000은 체다치즈를 포함한다). 이행 10년차부터 체다치즈는 더 이상 관세율할당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 천연꿀

13.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	200
2	206
3	212
4	219
5	225
5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매년 3%씩 복리로 증가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며, 쿼터 내 물량을 분기별 (12월, 3월, 6월 및 9월) 공매를 통하여 배분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의 대한민국 관세양허표의 일반주해 제3항카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X에 따라 취급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409000000.

신선 또는 냉장 감자(칩용 및 종자용 제외)

14.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	3,000
2	3,090
3	3,183
4	3,278
5	3,377
5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매년 3%씩 복리로 증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관세유탈당을 운영하며, 쿼터 내 물량을 공매를 통하여 배분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의 대한민국 관세양허표의 일반주해 제3항카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X에 따라 취급된다.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701900000.

## 오렌지

15.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	2,500
2	2,575
3	2,652
4	2,732
5	2,814
5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매년 3%씩 복리로 증가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관세할당을 운영하며, 쿼터 내 물량을 이행 1년차부터 이행 10년차까지는 연도별 공매를 통하여 배분하고, 이행 11년차부터는 가장 최근 3년 기간의 과거 실적에 기초한 허가 제도를 이용하여 배분한다. 공사는 매년 8월에 공매를 실시하고 수입허가를 배분하며, 수입자들은 무관세 물량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생산자단체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대외무역법상* 수입업자로 등록된 인 또는 실체는 무관세 물량의 할당을 받도록 신청하여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의 대한민국 관세양허표의 일반주해 제3항차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W에 따라 취급된다.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소호에 적용된다 : 0805100000.

**보리(맥주맥과 시리얼용 보리는 제외한다)**

16.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	2,500
2	2,550
3	2,601
4	2,653
5	2,706
6	2,760
7	2,815
8	2,872
9	2,929
10	2,988
11	3,047
12	3,108
13	3,171
14	3,234
15	무제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접수한 서면신청에 따라 선착순에 기초하여 1월 첫째 영업일부터 이 관세율할당을 위한 허가를 배분한다. 매년 1월 첫째 영업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신청인에 의하여 요청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당해연도 관세율할당 총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사는 신청자들 간에 관세율할당 물량을 비례로 배분한다.

1월 동안 요청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당해연도 관세율할당 총 물량보다 적은 경우, 공사는 그 연도 말까지 내내 지속적으로 선착순에 기초하여 관세율할당을 배분한다. 공사가 신청인에게 발급하는 각 허가는 발급일로부터 90일간 유효하며, 미사용된 허가는 90일 기간이 만료되면 공사에 반납되고, 공사는 허가가 반납된 날 후 45일 이내에 선착순에 기초하여 신청자들에게 미사용된 물량을 재배분한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 제1항아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H에 따라 철폐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1003009010 및 1003009020.

## 맥아 및 맥주맥

17.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	9,000
2	9,180
3	9,364
4	9,551
5	9,742
6	9,937
7	10,135
8	10,338
9	10,545
10	10,756
11	10,971
12	11,190
13	11,414
14	11,642
15	무제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접수한 서면신청에 따라 선착순에 기초하여 1월 첫째 영업일부터 이 관세율할당을 위한 허가를 배분한다. 매년 1월 첫째 영업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신청인에 의하여 요청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당해연도 관세율할당 총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사는 신청자들 간에 관세율할당 물량을 비례로 배분한다.

1월 동안 요청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당해연도 관세율할당 총 물량 보다 적은 경우, 공사는 그 연도 말까지 내내 지속적으로 선착순에 기초하여 관세율할당을 배분한다. 공사가 신청인에게 발급하는 각 허가는 발급일로부터 90일간 유효하며, 미사용된 허가는 90일 기간이 만료되면 공사에 반납되고, 공사는 허가가 반납된 날 후 45일 이내에 선착순에 기초하여 신청자들에게 미사용된 물량을 재배분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 제1항아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H에 따라 철폐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1107100000 및 1003001000.

## 옥수수전분

18.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	10,000
2	10,300
3	10,609
4	10,927
5	11,255
6	11,593
7	11,941
8	12,299
9	12,668
10	13,048
11	13,439
12	13,842
13	14,258
14	14,685
15	무제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접수한 서면신청에 따라 선착순에 기초하여 1월 첫째 영업일부터 이 관세율할당을 위한 허가를 배분한다. 매년 1월 첫째 영업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신청인에 의하여 요청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당해연도 관세율할당 총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사는 신청자들 간에 관세율할당 물량을 비례로 배분한다.

1월 동안 요청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당해연도 관세율할당 총 물량보다 적은 경우, 공사는 그 연도 말까지 내내 지속적으로 선착순에 기초하여 관세율할당을 배분한다. 공사가 신청인에게 발급하는 각 허가는 발급일로부터 90일간 유효하며, 미사용된 허가는 90일 기간이 만료되면 공사에 반납되고, 공사는 허가가 반납된 날 후 45일 이내에 선착순에 기초하여 신청자들에게 미사용된 물량을 재배분한다.

- 나. 가호에 규정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 제1항아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H에 따라 철폐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한다 : 1108120000.



## 식용 대두(IP)

19.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마호에 기술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	10,000
2	20,000
3	25,000
4	25,750
5	26,523
5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매년 3%씩 복리로 증가한다.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장류공업협동조합, 한국식품공업협회 및 그 밖의 대두가공업체를 대표하는 적절한 협회를 포함하는 대두가공업자들의 연합체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하여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한다. 그 연합체는 나호에 명시된 대로 관세율할당을 배분하고 공사는 그 연합체가 배분하는 물량에 대한 수입허가를 자동적으로 발급한다.

- 나. 그 연합체는 수입자의 서면신청에 따라 관세율할당을 배분한다. 서면신청은 수입자가 배분을 신청한 후 적어도 7개월 이후 배달을 위하여 미합중국의 IP 대두를 구매하겠다는 서명된 의향서를 수반한다. 그 연합체는 수입하는 연도의 이전 연도의 4월 1일보다 늦지 않은 때에 관세율할당 배분을 시작한다. 각 허가는 그 허가가 발급되는 당해 쿼터 연도 전체 기간에 걸쳐 유효하다. 수입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 선적은 그 제품이 IP 대두에 대하여 라호에 기재된 규격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독립된 제3자 검증기관으로부터의 문서를 수반한다.
- 다.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의 대한민국 관세양허표의 일반주해 제3항카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X에 따라 취급된다.
- 라. **IP 대두**라 함은 95퍼센트 이상의 단일종 대두를 포함하고 이물질은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선적분의 대두를 말한다. IP 대두는 벌크 선적될 수 없으며 포대나 컨테이너로 선적된다.
- 마. 가호 내지 라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1201009000.

수삼, 백삼(본삼, 잡삼 및 미삼)

20.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	5.7
2	5.9
3	6.0
4	6.2
5	6.4
6	6.6
7	6.8
8	7.0
9	7.2
10	7.4
11	7.7
12	7.9
13	8.1
14	8.4
15	8.6
16	8.9
17	9.1
18	무제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공매를 통하여 이 관세유탈당을 운영한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의 대한민국 관세양허표의 일반주해 제3항라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O에 따라 철폐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1211201100, 1211201210, 1211201220 및 1211201240.

## 사료용식물(기타)

21.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14	연간 200,000
15	무제한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이 관세율 할당을 운영하고 허가제도를 통하여 쿼터 내 물량을 배분한다. 등록된 배합사료제조업자, 등록된 단미사료제조업자 및 양축농가는 다호에 기술된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허가가 요청된 연도 직전 24월 동안 자신이 수입한 물량과 당해 연도에 요청된 원산지상품의 물량에 기초하여 관세율할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 제1항아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H에 따라 철폐된다.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1214909090.

## 조제분유 및 기타

22.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	700
2	721
3	743
4	765
5	788
6	811
7	836
8	861
9	887
10	무제한

한국유가공협회가 이 관세유탈당을 운영하며, 쿼터 내 물량을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허가제도를 통하여 배분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 제1항사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G에 따라 철폐된다.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1901101010 및 1901101090.

## 보조사료

23.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	5,500
2	5,665
3	5,835
4	6,010
5	6,190
6	6,376
7	6,567
8	6,764
9	6,967
10	7,176
11	7,392
12	무제한

한국단미사료협회 및 한국대용유사료협회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며 허가제도를 통하여 쿼터 내 물량을 배분한다. 이 관세율할당은 다호에 기술된 원산지상품을 신청자가 허가서가 발급된 연도 직전 24월 동안 수입한 물량과 당해 연도에 신청자가 요청한 원산지상품의 물량에 기초하여 배분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의 대한민국 관세양허표의 일반주해 제3항나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M에 따라 철폐된다.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2309902010, 2309902020, 2309902099 및 2309909000.

## 텍스트린

24.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	14,000
2	14,420
3	14,853
4	15,298
5	15,757
6	16,230
7	16,717
8	17,218
9	17,735
10	18,267
11	18,815
12	무제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접수한 서면신청에 따라 선착순에 기초하여 1월 첫째 영업일부터 이 관세율할당을 위한 허가를 배분한다. 매년 1월 첫째 영업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신청인에 의하여 요청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당해연도 관세율할당 총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사는 신청자들 간에 관세율할당 물량을 비례로 배분한다.

1월 동안 요청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당해연도 관세율할당 총 물량보다 적은 경우, 공사는 그 연도말까지 내내 지속적으로 선착순에 기초하여 관세율할당을 배분한다. 공사가 신청인에게 발급하는 각 허가는 발급일로부터 90일간 유효하며, 미사용된 허가는 90일 기간이 만료되면 공사에 반납되고, 공사는 허가가 반납된 날 후 45일 이내에 선착순에 기초하여 신청자들에게 미사용된 물량을 재배분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의 대한민국 관세양허표의 일반주해 제3항나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M에 따라 철폐된다.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3505104000 및 3505105000.